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용역)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 점
			배점한도가 K점인 경우 환산계수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0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9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0.98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75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0.965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0.95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0.94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0.80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또는 입찰용)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개정.'05.7.21, '07.5.4, '11.2.11)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

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배점한도가 K점인 경우 등급별 평점은 배점한도 “K”에 해당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환산계수를 곱해 산출된 점수를 적용한다.
5.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 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제3조 제1호에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